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8-82호
2018. 11. 2.(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고 시(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8-148호)1

공 고(4)

- 대전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1-상서10호선, 소로1-상서11호선)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공고 제2018-813호)2
- 345kV 신옥천-청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차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고 제2018-816호)4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세탁업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 (공고 제2018-819호)5
- 공 시 송 달 공 고(공고 제2018-836호)6

입법예고(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8-829호)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8-831호)1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8-832호)2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8-833호)29

공									
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소	도 로 명 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 고
오정동 499-4	대전로1019번길 84	2018 11 2	건물신축	대전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0,1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송촌동 221-35	동춘당로23번길 68-10	2018 11 2	건물신축	동춘당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2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이현동 346-1	대청호수로1325번길 22-1	2018 11 2	건물신축	대청호수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3,2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덕암동 7-5	덕암북로48번길 23-6	2018 11 2	건물신축	덕암북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4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목상동 209-2	대덕대로1508번길 33	2018 11 2	건물신축	대덕대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5,0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신일동 38-3	산업단지로87번길 37	2018 11 2	건물신축	산업단지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8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대전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상서10호선, 소로-상서11호선)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1. 대덕구 상서동 272-4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해제입안 신청이 있어 해제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하는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 공고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 하시고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가. 교통시설(도로)

1)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상서10	10	국지 도로	247	상서 산46-22	상서 276-1	일반도로	-	1998.04.13.	
변경	소로	3	A	6	국지 도로	85	상서 277-1	상서 276-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상서11	10	국지 도로	236	상서 279-1	상서 272-18	일반도로	-	1998.04.13.	
변경	소로	1	상서11	10	국지 도로	108	275-4	상서 272-1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상서10	8	국지 도로	85	상서 272-13	상서 271	일반도로	-	1998.04.13.	
변경	소로	2	상서10	8	국지 도로	85	상서 272-13	상서 27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상서11	8	국지 도로	63	상서 205-4	상서 산45-3	일반도로	-	1998.04.13.	
변경	소로	2	상서11	8	국지 도로	63	상서 205-4	상서 산45-3	일반도로	-		

2)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상서10	소로3-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원 및 노선 축소 - 폭원 : 10m → 6m - 연장 : 247m → 8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미집행구간 토지소유주 시설해제 요청사항으로 일몰년(2020년)도 이전까지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시설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
소로1-상서11	소로1-상서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 축소 - 연장 : 236m → 108m 	
소로2-상서10	소로2-상서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점부 도로모퉁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로1-상서10호선 미집행구간이 해제되어 변경됨에 따라 종점부 우측방향의 도로모퉁이가 불필요하여 변경함
소로2-상서11	소로2-상서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점부 도로모퉁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로1-상서11호선 미집행구간이 해제되어 변경됨에 따라 종점부 좌측방향의 도로모퉁이가 불필요하여 변경함

②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③ 공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대덕구 도시재생과 (별관4층)

④ 관계도면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재생과(☎042-608-510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345kV 신옥천-청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차 공시송달 공고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345kV 신옥천-청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차(사건번호: 17수용1683호)” 과 관련한 토지 등의 사용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보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개요

- 사업의 명칭 : 345kV 신옥천-청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차 (사건번호: 17수용1683호)
- 사업 시행자 : 한국전력공사[전남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2. 공고개요

- 공고내용 : 재결서정보 송달 / 재결일 : 2018. 7. 5.
- 공고기간 : 2018. 11. 2. ~ 2018. 11. 19. (17일간)
- 재결서정보 수령장소: 대덕구청 에너지경제과(☎042-608-648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3.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성명	송달주소	비고
1	김*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271, ***동 ***호(둔산동, 샘머리아파트2단지)	소유자
2	성*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74번길 54, ***호	소유자
3	성*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동 ***-*	소유자
4	성*호	주소불명	소유자
5	육*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	소유자
6	이*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로 *-**	소유자
7	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호수로1326번길 **	소유자
8	제주고씨*****중	대전광역시 중구 인창로28번길 **	소유자
9	진주강씨*****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424번길 ***	소유자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세탁업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3항(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세탁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세탁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업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폐업 일
세탁업	일광세탁소	대전로1131번길 12-23(오정동)	이상태	2012.06.30.폐업

2. 직권말소예정일자: 2018. 11. 19.

3. 처분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3항

4. 직권말소처분 사항 공시송달 내역

- 대상업소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5. 공고기간: 2018. 11. 02. ~ 2018. 11. 16(14일간)

6. 고지사항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2018년 11월 16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위생과 위생안전담당 ☎(042)608-6902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석봉1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거주지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발송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고대상 : 5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8. 11. 02. ~ 2018. 11. 16.(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대덕구 민원지적과(☎042-608-5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조 서

사업지구명 : 석봉1지구

연 번	토지소재		지목	면적 (㎡)	소유자정보		공시송달 사유
	동	지번			성명	송달주소	
1	석봉 동	417-9 2	대	1	윤*빈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85, 1**동 ***호(도마동, 대아아파트)	폐문부재
2	석봉 동	417-9 2	대	1	윤*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6길 **(송파동)	폐문부재
3	석봉 동	417-9 2	대	1	윤*준	경기도 과천시 공원마을3길 **(문원동)	폐문부재
4	석봉 동	416-4 2	대	1	곽*태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427	거주불명
5	석봉 동	353-7 7	대	112	강*규	대덕군 신탄진읍 석봉리 410	거주불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개정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18.12.31.)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안 제7조).

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부터로 함(안 부칙).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마.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소관부서 협의
- 5) 입법예고: 2018. 11. 2. ~ 2018. 11. 22. / 20일 이상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11.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과(전화 : 042-608-6872, FAX : 042-608-3841, E-mail : heicheon@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과 담당자 박희천(전화 : 042-608-68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도시재생과	
담 당 자 연 락 처	박 희 천 (042) 608 - 6872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개정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18.12.31.)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직접 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5년 이내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 (안 제9조 신설)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교통과

(전화 : 042-608-5283, FAX : 042-608-3845, E-mail : estnarack@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의견제출 후 꼭 확인전화 요망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과 담당자 오현경 (전화 : 042-608-52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개정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18.12.31.)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안 제20조).

나. 시행일을 2019년 1월1일부터로 함(안 부칙).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마.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소관부서 협의

5) 입법예고: 2018. 11. 2. ~ 2018. 11. 22. / 20일 이상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11.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설과 (전화 : 042-608-5225,

FAX : 042-608-3844, E-mail : franny1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설과 담당자 이수진 (전화 : 042-608-52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 설 과	
담 당 자 연 락 처	이 수 진 (042) 608 - 5225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제출일)
		2018.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0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개정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18.12.31.)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직접 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안 제11조 신설).

나. 시행시기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고자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규정함(안 부칙).

4. 의견제출

가.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11.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사회복지과

(전화 : 042-608-6383, FAX : 042-608-3833, E-mail : eyyoon9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과 담당자 윤은영 (전화 : 042-608-63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제4항, 제9조의2,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